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업 무 처 리 지 침



건 설 교 통 국
(교통정책과)

I. 배경 및 개요	1
1. 추진배경	1
2. 근거법령	1
3. 그동안 추진상황	1
4. 사업개요	2
5. 기관별 역할	2
II. 사업 추진체계	3
III. 세부 사업내용	4
1. 지원대상	4
2. 지원구간	5
3. 지원내용	6
IV. 보조금 지원개요	7
1. 보조금 과목	7
2. 보조금 지원절차	7
[붙임]	
1. 회원가입 신청 서류	9
2.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13
3. 보조금 정산서류	18
4. 관리자 계정 신청 공문(안)	25
[참고]	
1.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27
2. 관련 조례	31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절차 등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임

I

배경 및 개요

□ 추진배경

- 도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통학·통근 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제공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교통혼잡비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사회적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교통환경 조성 기여
-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증대로 지역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 근거법령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9.
- 도-천안·아산시 ‘철도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22. 12.
- 도-천안·아산시 사업비 분담 비율(5:5) 합의 : ’23. 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3. 10. ※ 신청서 제출(’23. 5.)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23. 11.

* 지원 대상 변경(이용객 전체 →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3. 12.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 : '24. 3.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행 : '24. 4.~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SRT) 시행 : '24. 9.~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API 구축 : '25. 7.
-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시간 정보유통서비스 연계 : '25. 12.

□ 사업개요

- (사 업 명)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 업 비) 500백만원(도비 250, 천안시 150, 아산시 100)
※ 예산과목 : 일반보전금 -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01-03
- (지원대상) 천안·아산↔서울·경기 구간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객 중 서울·경기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 주민
- (지원내용)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시 지역화폐로 환급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지원절차) ❶회원가입(홈페이지) → ❷자격확인(천안·아산시) → ❸교통비 신청(사용 후 신청) → ❹지역화폐 지급(천안·아산시) → ❺지원금 사용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충청남도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사업예산 편성 및 교부 ○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도 조례 개정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관리 총괄
천안시, 아산시	○ 사업수행(자격 확인, 지역화폐 지급 등) ○ 사업예산 편성·집행 및 정산, 시 조례 개정 ○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등
한국철도공사, (주)SR	○ 사업 시스템과 철도 정기승차권 데이터 연계 관련 사항 ○ 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 사업 관련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 등

II

사업 추진체계

단계별 구분		주요 내용	주기
사전 절차 (이용자)	정기승차권 구매·사용	• 코레일·SRT 정기승차권 구매 및 사용	수시
	지역화폐 가입	• 지역화폐 회원가입(14세 미만 불가) ※ 천안시(천안사랑카드), 아산시(아산페이)	〃
회원 가입	이용자	① 회원가입 전 필요 서류 준비 - (학생) 재학증명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② 회원가입(정기승차권·지역화폐 정보 일치) ③ 일정 주기별 자격 확인용 서류 재첨부 ※ 학생(3월, 9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6월)	수시
	관리자	• 지자체 담당자 계정 생성 신청(공문, 붙임4) ※ 담당자 변경 시, 신규 계정 신청	최초 1회
자격 확인	관리자	① 서류 발급 일자 확인(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 ② 서류와 작성된 정보의 내용 일치 확인 ③ 지원 자격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조치 - (학생) 학교 소재지 및 재학 기간<수기 확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가입자 유형, 가구원 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자동 확인> ※ 반려 시, 반려 사유 입력(이용자에 알림톡 발송)	수시 (자체설정)
교통비 신청	이용자	• 철도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한 달(해당 월)의 다음 달(익월) 지급	월 1회
교통비 지원	관리자(지급)	① 교통비 신청 건, 확정 조치 ② 지역화폐 시스템에 지급 내역 업로드 ③ 지역화폐 지급 결과 업로드(시스템 반영) ※ 지급 실패 시, 사유 입력(이용자에 알림톡 발송)	월 1회
	이용자(사용)	• 지역화폐 5년 내 사용(미사용 시, 소멸)	수시
사업 관리 (관리자)	사업 점검	• 사업비 집행 및 지원 실적 점검 등	분기별
	사업 정산	• 보조금 정산(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 시스템에서 철도교통비 지원내역 다운로드 가능	연 1회

Ⅲ

세부 사업내용

□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및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무소득자의 경우, 부양자 소득 적용)
- 서울시 또는 경기도로 통학하는 학생(소득 기준 미적용)
- ※ 주민등록 주소지가 천안시 또는 아산시여야 함

2.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필요서류)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①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 수 확인용>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유형 확인용>
- ③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용>

※ 부양자만 서류 발급 가능(피부양자의 경우, 일부 서류 발급 불가)

- (확인방법) 2026년도 소득판정기준표 활용, 본인부담금 표기액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판단

< 2026년도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 소득판정 기준표 매년 변동

○ 서울시 또는 경기도로 통학하는 학생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재학하는 학교 소재지 확인용>
- (확인방법) 학교 소재지 및 재학 기간 확인
-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가입·신청·수령 가능

○ 공통 사항

- 서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회원가입 후 이용자는 일정 시기마다 '대상 여부'를 재증명하여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매년 6월 <건강보험료 정산시기 고려>
- (학생) 매년 3월, 9월 <학사일정 고려>

3. 14세 미만 지원 방법

○ 법정대리인이 14세 미만 학생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수령 가능

- 단, 본인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철도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이 불가하여 수기로 가입 추진

※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휴대전화 1대 당 회원(아이디) 1개만 가입 가능

- 회원가입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제출(붙임1)

※ 수기 회원가입 제출처·제출 방법 등 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지원 구간

○ 천안시·아산시 ↔ 서울시·경기도(출발역 또는 도착역 기준)

천안·아산권	천안아산, 천안, 성환, 아산, 온양온천, 도고온천역 등
수도권 (서울·경기)	<코레일:9개> 서울, 용산, 영등포, 행신, 광명, 안양, 수원, 오산, 평택역 <SRT:3개> 수서, 동탄, 평택지제역

※ 표기된 역사 외에도 지역 내 소재한 역사는 지원 가능

<참고> 철도 정기승차권 개요

- (코레일) 지정한 승차 구간을 유효기간 동안 1일 2회(왕복)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승차권 비용보다 45~60%까지 운임 할인된 승차권

정기승차권 종류			할인율	이용 기준
일반형	어른	10일용	45%	월~금요일만 이용 (토~일, 공휴일은 일산정 제외)
		1개월용	50%	
	청소년	10일용	60%	
		1개월용		
기간 자유형	어른	10~20일	45%	이용 기간과 휴일 이용 포함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휴일 이용 시, 운임에 포함
		21일~1개월	50%	
	청소년	10일~1개월	60%	

※ N카드는 지원 대상이 아님(승차권 아님, 승차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카드)

- (SRT) 정기승차권은 일반형만 판매(주말·공휴일 사용 가능), 코레일 승차권과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청소년 10일용만 55% 할인 적용

□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6. 1월부터
- (지 원 액)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시 지역화폐로 환급(유효기간 5년 내 사용)
- (지급시기) 신청한 달(해당 월)의 다음 달(익월) 지급

2.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 철도 정기승차권 사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보조금 과목

-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3) : 지자체가 법령(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

※ 광역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보조금 지원절차

1. 보조금 신청

- 시는 서식에 맞춰 교부신청서 등 서류(붙임2) 제출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정·재검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교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청구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청렴 이행서약서 1부.

2. 보조금 교부 결정

- 보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철도교통비 지원을 받는 자)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서류 위조 등)으로 지원받은 자 등

3. 보조사업 수행 시

-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는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경미한 사항 예외)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로 관리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으로부터 철도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교통비 중복 지원에 해당)
 - 재학증명서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
- 부정수급자 적발 횟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간 차등적용
 - 1회 적발(6개월 제외), 2회(1년 제외), 3회 이상(영구 제외)

4. 보조사업 정산

- 시는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서류(붙임3)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가급적 3개월 내에 정산금액을 확정 통보해야 함
 - 보조금 실적보고서 1부.
 - 정산보고서(지출내역 포함) 1부.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내역 1부.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1부.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1부.
- 미집행액, 집행잔액 및 예금 결산 이자는 사업이 완료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추경 편성 등)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서(오프라인용)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0000.00.00 (성별)
주소 (주민등록기준)			
홈페이지에 가입된 신청인 정보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아이디			
핸드폰 번호			
회원가입 신청 아이디			
※ 영문 또는 영문+숫자 6~20자 / 사용 중인 아이디인 경우, 관리자 임의 생성			
1순위			
2순위			
3순위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시장 귀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음)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미동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사업 이용약관 동의서 1부.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유의사항 ① 충남 교통비 지원 <u>홈페이지 기존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u> (기존회원의 14세 미만 자녀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서) ②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 정보는 철도 정기승차권과 지역화폐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철도 정기승차권 확인 및 지역화폐 지급 가능) ③ 아이디가 생성되면 핸드폰 번호로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이후 회원가입 절차(비밀번호 변경 등)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청남도 00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오프라인 회원가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기재사항)

☐ (주민등록) 번호 : _____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기존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자 중 14세 미만 자녀 등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철도 멤버십번호, 지역화폐 카드번호, 철도 정기승차권 정보(번호, 기간 등), 기준중위소득 서류(건강보험 관련), 재학증명서류(학교) 등 신청인이 입력 및 제출하는 사항
- 개인정보는 ‘회원가입 신청서(오프라인)’ 등 제출서류 외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위한 거주지 검증, 철도 정기승차권 사용 확인,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확인, 교통비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지역화폐 회원정보 확인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철도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주)소울인포테크(홈페이지 운영사), 코나아이(천안사랑상품권), 한국조폐공사(아산페이), 코나아이 및 한국조폐공사 운영대행사, 소속 학교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회원가입 여부, 철도 정기승차권 사용 확인,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 확인, 지역화폐 지급 등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지역화폐 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철도 회원번호, 정기권 사용구간, 정기권 발행일자, 정기권 구입금액, 지역화폐 지원금액, 소속 직장(근무지역, 근무기간) 및 학교(학과, 재학기간) 등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회원정보(탈퇴시까지),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관련정보(자격승인일로부터 3개월)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약관, 개인정보처리 및 위탁에 관한 안내 약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 ※ 홈페이지 공지된 개인정보 관련 방침/약관 포함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약관 동의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나, 기존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자 중 14세 미만 자녀 등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이용에 관한 조건, 의무, 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의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약관은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 이 약관의 내용은 충청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공지와 동시에 효력을 가집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정보(14세 미만 자녀 정보 포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 절차에서 타인, 가공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확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충청남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4조 (타 이용 규정 적용)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 정기승차권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 ㈜SR의 규정을 적용하고,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하여 코나아이(천안사랑상품권) 및 한국조폐공사(아산페이)의 규정을 적용하여 따릅니다.

제5조 (이용자의 정보 보안) 회원가입(온·오프라인 포함)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6조 (의무 및 책임) 충청남도는 회원 및 이용자가 기대하는 손익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자료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의 규정(홈페이지 포함)을 위반하여 충청남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충청남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뿐만 아니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이 직접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이용약관을 숙지함 ☐ 이용약관에 대해 동의함 ※ 홈페이지 공지된 이용약관 내용 포함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 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 해야 할 금액 기재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장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요추진내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고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업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자체 부담 : 천원(%)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 + B)	지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수용비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시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게시기간	게시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 고 계 획	비 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10. 기타 내용

-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12,300,000원(금일천이백삼십만원) <예시>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충청남도지사 귀하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 실적보고서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3.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내역
4.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5. 기타 관련서류

2025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지방보조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 . . ~		
교부 결정일			
사업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 - -		
사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 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원)	수량	취득가액(원)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신규취득
									수량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사업자	부기등기대상부동산	물건의명칭	면적(m ²)	사후관리기간	취득/말소일	말소사유	변동내역
								관리기간변경
								부기등기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	
자부담							

2. 내역별·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지 출 내 역	지출 번호	지급 방법
총 계						
보 조 금	소계					직불카드
						계좌입금
자 부 담	소계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작성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당초 계획액(A)	실제 사용액(B)	증감(B-A)	집행률 (B/A*100)
계				

5.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원)

세 부 내 용	예산비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주요 변경 사유	비고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지사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내역

○ 지원기간 :

○ 지원금액 : 원(명/건)

연번	성명	정기승차권 번호	이용 기간	출발역	도착역	정기권 금액	지급액	신청일	지급일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사랑의 첫 걸음은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짓기"부터 시작합니다.

충 청 남 도

마음모아
충청남도

수신
(경유)

제목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생성 신청

1.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생성을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신청서 1부.
2. 사무분장(공문) 1부. 끝.

주무관

참조자

시행

접수

주 3220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835-4571

팩스번호 041-835-3093

/ bk006@korea.kr

'고향사랑'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가능합니다.

< 신청서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신청서

신청인		직급	
소속		부서	
접근계정(ID)			
사용자 ip			
사용 목적			
사용 기간	0000. 00. 00. ~		
사용 장소			
비고			

<신청 시 유의 및 준수사항>

1. 업무외 개인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업무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 및 복사, 분실, 훼손하지 않으며 업무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시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5. 본인은 기밀 누설 및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
6. 본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였고 준수할것이며 보직 변경 이후에도 위 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신청자(담당자)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담당팀장)	소속		성명	(서명)

※ 공문 발송 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

참고1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1 가구원 수 확인

신청인 (김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1 / 1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통보번호 :				
수신기관명	요양기관명	자격확인요청일	2022.05.02	
통 보 호	2468101357900	사업장관리번호		
가 입 자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 청 년	901231-*****		
자 격 확 인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합계정지사유 및 기간
김청년	901231-1*****	2020.01.01	}	▶가입자 : 김청년 ▶피부양자 : 김아빠, 이엄마, 김동생 ▶가구원 수 : 4인
김아빠	650101-1*****	2020.01.01		
이엄마	650101-2*****	2020.01.01		
김동생	951231-1*****	2020.01.01		
_____	_____	이하여백	_____	_____
이와같이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 가입유형 확인

신청인(김청년) 건강보험 가입현황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인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기록 상

지역 가입자 또는 **지역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현황은 **지역**에 체크

발급번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제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 청 년	901231-1*****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지역가입자		2020.01.01	
2				
3				

발급번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제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 청 년	901231-1*****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1	지역피부양자		2020.01.01	
2				
3				

신청인(김청년) 건강보험 가입현황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인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기록 상
직장 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현황은 **직장** 에 체크

발급번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 청 년	901231-1*****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득실일	자격상실일
1	직장가입자	커피가맛있는커피	2020.01.01	
2				
3				

발급번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 청 년	901231-1*****		
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				
No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득실일	자격상실일
1	직장피부양자	커피가맛있는커피	2020.01.01	
2				
3				

3 보험료 확인

1/1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성명	김청년	생년월일	2004.05.01
사업장 명칭	희망카드 주식회사	납부자번호	

2023년 01월 - 2023년 08월 납부내역 → 2023년 전체 기간 선택

(단위: 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 (건강)	소득월액 (요양)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 (건강)	소득월액 (요양)
1월	71,020	8,710	0	0	71,020	8,710	0	0
2월	71,020	8,710	0	0	71,020	8,710	0	0
3월	71,020	8,710	0	0	71,020	8,710	0	0
4월	71,000	8,710	0	0	71,000	8,710	0	0
5월	71,000	8,710	0	0	71,000	8,710	0	0
6월	71,000	8,710	0	0	71,000	8,710	0	0
7월	71,000	8,710	0	0	71,000	8,710	0	0
8월	71,000				0	0	0	0
9월	0				0	0	0	0
10월	0				0	0	0	0
11월	0				0	0	0	0
12월	0				0	0	0	0
연말정산	-80	0			-80	0		
합계	567,980	69,680	0	0	496,980	60,970	0	0

납부총액

567,950

용도구분

납부확인용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9월 8일 → 신청월에 발급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이 확인서는 실가 사용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용도(채적·권력증명, 금융기관 제출 등)로 사용되어 발생된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go.kr) 또는 납부확인용의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공인 인증서 필요),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 까지). 단, 정부24에서 발급 받은 경우는 정부24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기준이며, 당일 보험료 청산, 자격변동신고, 납부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용,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은 납부하신 연세금과 신용카드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취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남도조례 제558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 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9.>

나.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 <신설 2023. 12. 29.>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신설 2023. 12. 29.>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29.>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개정 2023. 12. 29.>

아. 제2호다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신설 2023. 12. 29.>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7.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신설 2023. 12. 29.>
8.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3. 12. 29.>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대중교통운영자는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도지사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2. 29.>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군수에게 제9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④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9.]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에게 이용지원 대상자 또는 지방 보조사업자 등을 조사·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별표]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 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	4.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	8.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5. 철도 이용자	9. 제2조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100분의 25	